

설계자	확인자	설계년월일	2022.03.10.

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지원산업단지 개발사업
예비타당성조사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9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2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2
7. 보안대책.....	13
II. 예정공정표.....	15

I. 과업지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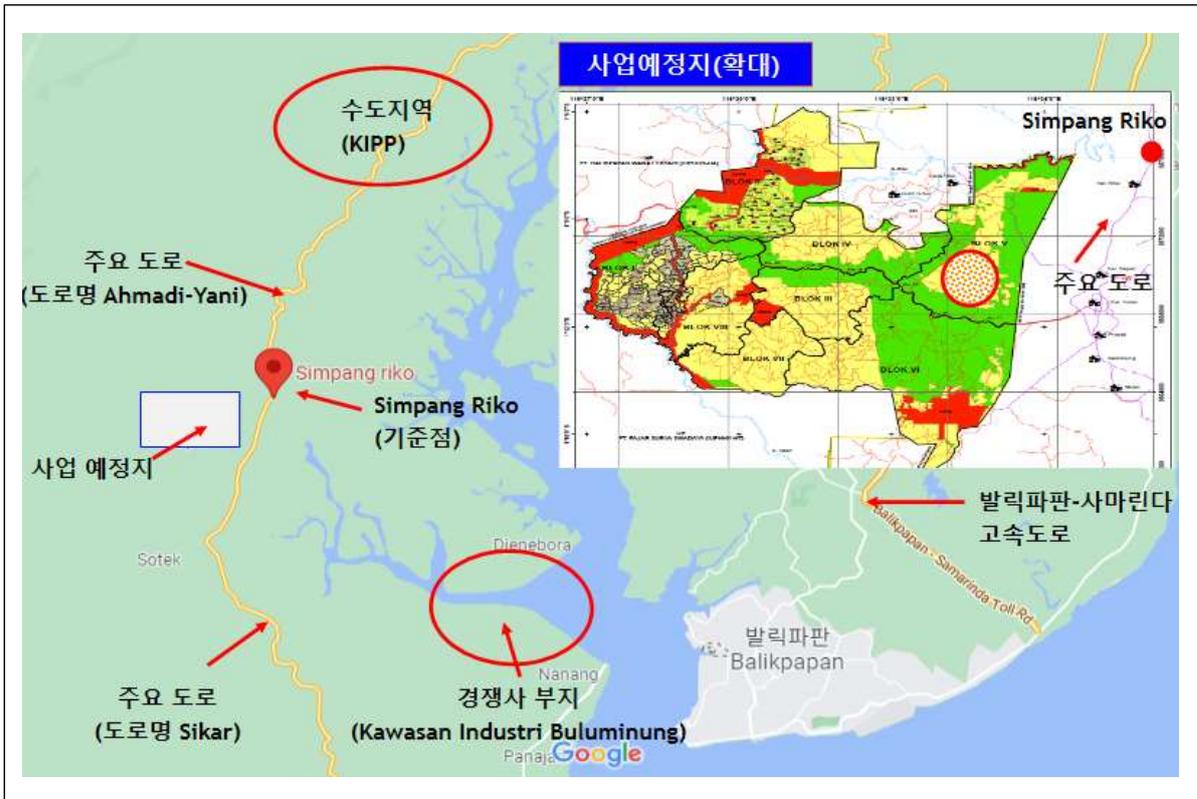
1. 개 요

□ 과업명 :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지원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

□ 과업목적

○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지원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신수도 핵심공공업무지구 (1단계 개발지역)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현지사가 보유한 조림지 약 300ha(1단계: 100ha, 2단계: 200ha, 예상 면적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, 세분화 등 검토)를 건설지원산업단지로 개발, 운영함으로써 임대 및 분양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임

○ 예상부지 지도



※ 단,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신수도의 건설예정기간은 총 3단계(~ 2045년)로 구성된 장기사업이며, 인근 대도시(발리파판/사마린다)에서 건설자재, 인력 등 리소스를 조달하는 것은 거리상 비효율적이므로 신수도 예정지 인근에 건설지원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
[신수도 사업개요]
 - (~ 2024) 1단계 개발 : 정부핵심 기능 이전
 - (~ 2030) 2단계 개발 : 주변 위성도시 조성
 - (~ 2045) 3단계 개발 : 수도권 광역개발 완료

- 이에 따라, 건설지원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입지적정성 분석, 부동산 시장조사, 입주기업 수요조사, 인도네시아 토지·부동산 제도 및 신수도법, 시행령 등 관련 법률 분석, 사업환경 분석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, 시나리오별 사업구조 수립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, 법률 검토를 수행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 사업 참여자 의사결정, 공동투자자 모집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 - ※ 건설지원산업단지: 건설자재 생산업체(레미콘, 아스콘, 블럭, 골재, 창호, 철골, 철근가공, 장비정비, 시멘트, 가구 등) 및 자재야적장, 물류센터, 근로자숙소/식당/생활 편의시설 등, 신수도 건설관련 지원기능을 갖춘 산업단지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80일

3. 과업내용

1) 시장조사

□ 부동산 시장조사

- 부동산시장 및 건설지원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사례 분석
 - 인도네시아 및 칼리만탄섬, 동칼리만탄지역 각각에 적용되는 국토개발 계획, 지역별 개발 마스터플랜, Core 개발예정지역, 산업단지 유치/건설 계획 등 상하위 개발 계획 검토
 - 신수도 및 사업예정지, 주변 토지 거래사례, 소유권 현황, 가격 조사

- 동칼리만탄(발릭파판/사마린다 포함) 및 현 수도 및 인근지역(브카시 등) 유사 기능을 가진 건설지원단지 및 타 종류/기능 산업단지 건설, 운영, 분양/임대, 정부지원 사례조사
- ※ 건설지원기능을 가진 단지 유사사례 및 시장사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
- 동칼리만탄(발릭파판/사마린다 포함) 지역 지역별/용도별 임대 및 분양 행태, 임대료 및 분양가, 거래시 적용 법규/규정, 거래시 유의사항 조사
- 건설지원산업단지 현 대상부지 입지 적정성 및 대안부지, 경쟁사업 분석
 - 장비, 원자재 입출고 설비, 도로망, 신수도 근접성, 신수도 우선 건설 대상지역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대상부지의 입지 적정성 분석 및 대안부지, 경쟁사업/부지 분석
 - 대안부지 및 경쟁사업 분석: 위치, 기능, 가격별 검토, 분양가격, 미분양 현황, 입주기업 및 업종, 용도별 토지공급 규모
 - 상기 산업단지 및 경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대상지 및 예상 경쟁 산업단지(대안) 비교를 통한 최적안 도출
- 외국기업 산업단지개발(복합개발) 진출 사례 분석
 - 외국기업 단독개발, 외국기업과 로컬기업의 JV개발, 로컬사 단독개발 등 사례별 구분
 -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투자자에 제공한 유무형 혜택(토지, 세제혜택, 기타 투자자보호책, 수요 일부확보 등) 사례 상세조사
- 선정된 최적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/분양가 산정 및 수요 도출
 - 최적의 개발방식/구도 제안
 - 건설지원산업단지 전략 유치업종 제안
 - 개발방식/구도별 적정 임대/분양 방식, 임대/분양가 산정 및 예상수요 도출
- 선정된 최적 부지에 대한 부동산현황 상세조사 및 적정가치 도출
 - 토지 소유권 경과, 현황, 법적용도 등 상세조사
 - 과거 시세 분석 및 적정가치 도출, 미래가치 전망 등

- ※ 시장조사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련 리서치 또는 마케팅 수행 경험이 있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(자문) 회사에서 수행함을 권장 (증빙서류(Letter of Intent 등) 가능시 첨부 요망)

2) 입주기업 수요조사

□ 입주기업 수요조사

- 신수도 건설 지원을 위한 건설지원산업단지 적정 구성 도출
 - 건설단계별 적정 용도지역(주거, 상업, 오피스, 야적장, 물류센터, 자재생산공장 등) 구성 및 용도별 토지 및 부동산 수요 추정
- 인도네시아 기 진출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 분석
 - 인니 신수도 업종, 매출액 고려 인도네시아 신규 진출 실수요 기업 범주 설정 및 분석
 - 건설지원산업단지 입주예상 후보기업 (현지, 우리기업, 제3국기업) 범주 설정 및 분석
- 마케팅, 홍보 및 입주의향 조사
 - 홍보 전략 수립
 - 마케팅 전략 수립: 경쟁 건설지원단지가 설립되었을 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서비스, 임대/분양가, 입지조건 차별화 전략 도출
 - 잠재 입주기업向 설문조사 등

3)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사업환경 분석

-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조사
(건설지원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최적 부지로 선정된 지역)
 - 토지이용현황 조사

- 토지소유권 조사
- 지장물 및 개발 장애요인 조사
- 지반조사
 - 현황측량 (300ha, 1:1,000 수준)
 - 사업대상지의 현지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수행 (500m 당 1공 이상 권장)
- ※ 지반조사는 현지 전문기업에서 수행함을 권장

□ 개발전략 및 기본구상

-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예정부지를 건설지원 산업단지로 개발 시 필요한 진입도로, 기타 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구역 재검토 및 구역계 설정
 - 토지이용계획 수립
 - 광역교통계획 조사 및 반영
 - 인프라 공급계획 수립
- 토지용도별 배분 계획 수립
 -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 검토
 - 신수도 개발사업을 고려하고, 부동산 시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별 수요분석
 - 도입기능별 대상지와 인근 지역과의 경쟁구조 분석을 통해 대상지의 용도별 수급권 범위 분석
- 사업 시행 로드맵 수립
 - 산업단지(건설지원산업단지) 준공 시까지 필수 인허가 승인항목 분석 및 제시
 - 단계별 시행 계획(1단계: 100ha, 2단계: 200ha)의 적정성 및 사업 시행 로드맵 수립
- 인프라 공급 계획 수립
 - 상위계획, 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 방향 제시
 - 공급처리시설 계획 수립 (진입도로, 상수, 우·오수, 전력, 통신 등)
 - 친환경 계획 및 재해 예방 저감대책 수립
 - 사업예정부지 인근 전력 및 용수 계획 공급 마련

□ 관련자료 조사

-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설계 기준 검토
- 인도네시아 및 칼리만탄 섬 개발 계획 / 국가 개발계획 / 관련기관 발행 자료
- 기존 도로, 하수·상수 관망, 중계펌프장, 취수원 현황

□ 기술적 사항

- 계획인구 산정
- 개발지역 설정 및 EPC 공사방법 검토
- 기존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 철시설, 관로 등) 연결 및 신설 계획
- 홍수 저감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 계획 수립
- 물량산출(BOQ) 및 공사비 산정
- 현지 산업단지 건설비용 비교 및 분석

4)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사업환경 및 시장 조사

- 현황조사(건설지원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최적 부지로 선정된 지역)
 -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일반현황 조사
 - 인구, 가구 수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
 - 국가계획, 지역계획, 도시계획, 지역 관련 개발계획 등 조사
 - 자연환경, 사회·경제·문화·환경 현황조사, 등
 - 유치업종 조사 및 전략수립
 - 외국기업 산업단지(복합개발) 진출 사례 분석

□ 사업추진 주체간 위험분산 가능성 검토

- 현지공동참여사 및 시공사의 사업관리능력/시공능력 및 신용도 검토
- SPC사의 분양능력 및 신용도 검토
- 사업보증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신용도 검토

□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

- 본 사업의 적정 부채비율 제시

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예비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
- 대주단의 타인자본 조달비용 제시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
- 사업대상국 정부기관 및 인프라투자기관 보증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 검토
- 해당국 내 산업단지(건설지원산업단지)사업 Project Financing 사례 검토

□ 총 투자비 산정

- 총사업비(기술부문 산출)에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를 산출하여 총 투자비 산출

□ 추정 매출액 산정

-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연구결과 검토를 통하여 조사시점의 차이, 환경 변화, 다양한 가정의 변경에 따른 조정된 추정 매출액 산정

□ 재무적 타당성 분석

- 본 사업의 사업모델 제시
-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
- 신수도 건설계획을 최대한 입수하고 반영하여 신수도 건설의 시기적, 지역별 단계를 시나리오로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적정 사업규모, 사업확장 단계 등이 도출 가능하고 분석 가능하도록 모델 제시
- 현금흐름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 (DSCR, IRR, NPV 등)
- 기회 및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
-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(사업비, 분양비용, 이자율 등)

□ 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
- 시행사 위험(인허가, SPC 설립 및 출자, 과실송금 등) 분석
- 투자 회수전략 수립시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방안
- 리스크 조치계획(Risk Management Plan) 수립
- 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검토

5) 법률 검토

-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및 관련 법률 분석
 - 본 건 사업구조와 관련한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(Negative List) 등 한국 컨소시엄 및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

서 투자관련 법률 검토

- 사업대상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투자조건, 권한, 제약 등을 검토
- 사업대상국의 현지의무조달비율(Minimum Level of Local Content) 관련 법률 검토 및 산출방법 제시
- 해외투자자로서 사업상대국에서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을 하기 위한 제면허 조건 및 취득절차
- 토지용도변경(조림지→산업단지), 산업단지개발 및 토지 취득법 등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
- '22년 1월 공포된 신수도법과, 신수도법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중 추가로 공포되는 시행령 등 관련법에 대한 상세분석 및 본 사업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, 기존 법령과 상호 영향이 있거나 중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용 순위 분석
- ※ 발주처는 사업대상국의 기본법률, 투자환경과 관련 2021년 분석한 법률 및 제도 자료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할 예정임

○ 법인 설립 절차

- 법인 설립 절차 검토
- 단지 조성 후 분양에 관한 시행절차 및 요건의 법률적 검토

○ 사업위험과 보증체계, 대응방안 검토

- 사업위험도 분석 및 최적 사업 협약서(안) 수립
- 본 사업의 이해당사자(Stakeholder)간 최적 위험분담체계 제시
- 시행사 위험 (인허가, SPC 설립 및 출자, 과실송금 등)
- 시공사 위험 (공사완공 지연, 부실시공 등)
- 사업비 초과 위험
- 재원조달 위험
- 공사비 증가 위험
- 임대 및 분양수요 부족 위험
- 불가항력 위험 (정치, 전쟁, 재해 등)
-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위험 보증체계 또는 투자자 보호정책 검토 및 본 사업 적용방안 제시
- 기타 관련규정 및 분쟁조정 검토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

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인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 - 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<사업제안자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

※ <사업제안자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※ 각종 성과물은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제출
- ※ 성과물 제출시에는 성과물의 내용을 정리한 ppt 형식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우리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44조(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·부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비고
1. 부동산 시장조사		■						
2. 입주기업 수요조사			■					
3.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			■					
4.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			■					
5. 법률 검토			■					
6. 성과품 작성						■		
보고회		착수보고			중간보고		최종보고	
과업진도율	당기	15	25	20	20	15	5	
	누적	15	40	60	80	95	100	

